

# 建築法施行規則中改正令

## ◎건설부령제160호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75년 9월 23일

건설부장관 권

###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3호를 제6호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뒤채움돌부분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가. 석축용 돌의 뒷길이

(단위 : 센티미터)

구분 \ 석축높이	1미터이상 1.5미터까지	3미터 까지	5미터 까지
멧쌓기	25	35	35
칼쌓기	25	30	35

나. 석축의 뒤채움돌부분의 두께

(단위 : 센티미터)

구분 \ 석축높이	1미터이상 1.5미터까지	3미터 까지	5미터 까지
성토 상부두께	20	20	20
하부두께	30	45	60

절토 상하부 두께 35

4.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으로 조성된 대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에 건축물 외벽면에서 석축 연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층수    1 층    2 층    3층이상  
 띄어야할 거리   1.5미터   2미터   3미터

5. 석축으로부터 2미터이내에 배수관을 배설

하고자할 때에는 주철관·강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버림콘크리트 바닥위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그 이음부분에 누수방지를 위한 물탈시공을 하므로써 시장·군수가 누수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으로 오지토관을 사용할 수 있다.

7.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연단에서 2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의 부분에는 지표에 불투수층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지상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시켜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8. 석축(줄눈이 없는 멧쌓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는 1평방미터당 1개소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이면에 있는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